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95
----------	------

발의연월일 : 2021. 3. 24.

발의자 : 김선교 · 이철규 · 윤창현

김예지 · 이종배 · 권성동

김석기 · 안병길 · 구자근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장애인 인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북한의 장애인들은 북한 정권과 지역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등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개인에게 국가를 수호하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임. 이에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및 영유아”를 “, 영유아 및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2. -----, 영유아 및 장애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